

건전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2020. 4.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 목 차 】

I. 추진 배경	1
II. 근거	1
III.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2
IV. 추진 목표	7
V. 세부추진과제	8
과제1.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지속 운영	8
과제2. 관계기관과 연계한 안전한 환경 조성	11
과제3.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12
과제4.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14
과제5. 디지털(사이버) 성폭력 신고체계 및 교육 강화	17
과제6. 학교 성폭력 신고·보고 체계 구축	15
과제7. 교(직)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 준수 및 징계 강화	21
과제8.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법률 준수 강화	22
과제9.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	23
과제10. 피·가해 학생 상담 및 치유 지원 활동 내실화	24
VI. 기대효과	25
VIII. 행정 사항	23

I 추진 배경

- 사회 전반에서 지속·확산되고 있는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근본적 예방을 위해 기반 마련 및 지원 필요
 -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 학교 내 교육적 해결 지원을 위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지속 추진

- 교원의 성범죄 관련 징계의 엄정성 확보 및 실효성 있는 예방 필요
 - 최근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성관련 비위 교직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대다수 선량한 교직원의 권익 보호
 -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범죄 교원의 징계 강화 방안 마련 및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생·학부모 불안감 해소, 피해 예방 등 적시 대응을 위해 피해 대응요령 및 예방교육 필요

II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36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 2020년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 시행 계획(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345, 2020.1.31.)
 - 2020 학교 성교육(양성평등교육) 운영계획(인성건강과-6887, 2020.4.2)

Ⅲ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1 추진현황

□ 신고 및 사안 대응 강화

- (신고센터 운영)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스쿨미투 사안 신고·처리 활성화에 노력
 - 우리청 홈페이지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바로가기 서비스 상시 운영
 -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링크·연계 운영
- * 학교 홈페이지 배너,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

□ 사안처리 체계 구축 운영

- 사안 발생시 업무 담당부서별 학교 지원
 -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유형별 사안에 따라 학교 성폭력 신고·보고체계를 구축 운영함
 - 성폭력 사안 발생을 인지한 경우 주관부서에 보고 및 사안처리를 의뢰하도록 운영하고 특히 중대 사안의 경우 외부전문가 포함 또는 상급기관에서 확대 지원
 - 스쿨미투 사안 전담 부서 지정·운영(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 * 스쿨미투 사안 전담 조사관 2명 배치, 사안조사 후속조치·재발방지 교육
- (사안처리 매뉴얼 개발) 전라북도교육청 자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학교 현장 보급 예정 ('19.12월, 2차 개정판 보급)

사람의 가치는 높이는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p>발간등록번호 한민교육 2019-0-011</p> <p>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p> <p>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의 개념, 유형, 예방교육, 사안 신고 ▶ 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지원체계, 학교사안처리절차, 유형별 사안절차 ▶ 사례 및 판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피해자)-학생(행위자)간 유형사례 - 학생(피해자)-교직원(행위자)간 유형사례 - 교직원(피해자)-학생(행위자)간 유형사례 - 교직원(피해자)-교직원(행위자)간 유형사례 ▶ 부록

□ 교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징계제도 개선

- (성비위 교사에 대한 엄정 징계) 징계 및 이행 강화를 적극적으로 안내
- (가해 교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성비위 교원 징계 처분하고 교단 복귀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특별교육 기관에서 30시간 대면교육 이수 의무, 이수증 첨부 제출
- (성인권 침해 재발방지 및 회복적 특별 인권교육) 스쿨미투 사안 전담부서인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전년도 성사안 발생학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및 회복교육 실시 (교육내용 : 2개교, 교직원교육 2시간, 학생교육 9시간)
- (성범죄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을 통한 상담 및 병원 진료 지원, 긴급전보를 통해 피해 교사가 원하는 경우 인사 이동 조치
- (학교 성폭력 분야 전담인력 배치 및 치유시스템 구축) 일반 임기제 공무원 배치 (전주 3명, 계약직 5년), 교육공무직 전문상담사 배치(15명, 교육지원청별 1명)

□ 현직 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교내 담당자 및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연수 실시
 - 관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15차시, 250명, 집합)
 - 인문학으로 여는 성평등 토크 콘서트 (교원 200명, 연수)
 - 참여형 성평등 토크 콘서트 (106명, 참여형 연수)
 - 라이프스킬 기반 건강프로그램 적용 성교육 연수 (2회, 200명, 집합연수)
 - 성고충 상담원 연수 (106명, 30시간, 온라인연수)
- 교육청 소속 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담당자 및 관리자 연수 실시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통합 예방교육 실시(2회, 954명)
- 학생 발달단계 및 학교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학생 대상 예방 교육
 - (학생 성교육 집중 프로그램 운영)성교육 지원을 위한 성교육 전문강사 지원

- (자체 개발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 운영
- 양성평등한 문화확산을 위한 학교 성 인권 교육 운영(익산시 성폭력 상담소)
- 양성평등 현장 지원을 위한 교원 워크숍
- 정규교과 수업을 활용한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등 운영 활성화 노력

* 2019.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모든 학교에서 학년별 15차시 성교육 실시(771교) 안내

□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안전 시스템 구축

- (과대료 부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 법률 위반 과대료 부과(성범죄 신고 의무 위반 2건,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등)
-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 (CCTV 설치) 고화질 CCTV 설치 지원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의 지속적 운영·체계 확충 등 필요

-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예방 교육 및 인권·성평등교육 강화, 학교내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운영 필요
- 부서간 업무 협력 강화 필요 및 사안처리 역량강화교육 필요
- 학교폭력 및 성폭력 감소 추세 ('19 전복현황)

연도	초	중	고	계	학교폭력 유형							
					단순 폭행	집단 폭행	금품 갈취	금품 폭행	따돌림	괴롭힘	성사안	소계
2015	86	251	185	522	321	30	26	47	2	34	62	522
2016	91	317	181	589	371	42	18	31	3	48	76	589
2017	107	282	195	584	291	62	27	32	13	48	111	584
2018	88	311	216	615	279	65	29	20	25	69	128	615
2019	109	265	137	511	270	42	25	17	8	53	96	511

□ **학교 현장 성인지감수성 및 양성평등 교육 강화 필요**

- 사회적 의식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에 성차별적 관행 존재, 성별갈등과 혐오·피해의식 있음

☞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 **디지털 성범죄(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필요**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생·학부모 불안감 해소,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필요

□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구성 등 종합대책·체계 확충 필요**

-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예방교육 및 인권·성평등교육 강화, 학교내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 부서간 업무 협력 강화 필요 및 사안처리 역량강화교육 필요

□ **징계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 강화 필요**

- 가해 교원의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 징계 결과의 투명성 확보 및 피해자의 권리 강화 필요

- 징계 이후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의 근본적 인식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 교육·상담 의무화 필요

[성비위 징계자 현황]

연도	징계 건수	범죄대상			징계의결					
		일반인	교직원	학생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018	3		1	2	1				1	1
2019	6		2	4		1	4		1	

□ **피해자 보호 지원 및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 필요**

- 학생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학급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치유 지원 필요
- 학교 공동체 관계 회복을 위해 학생·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교육적인 해결 및 학교 문화 개선 필요
 - ※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을 통한 상담 및 병원 진료 지원
 - ※ 인사관리규정의 긴급전보를 통해 피해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가능

[성인권 침해 재발방지 및 회복적 특별 인권교육]

2019 사안발생학교 재발방지 및 회복교육	학교(수)	교직원교육 (시간)	학생교육 (시간)
		11	32

□ **성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 및 관리자 대상 예방 교육 강화 필요**

- 학교 내 사안발생시 책임자인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예방교육 및 사건처리 역량 강화교육 필요
-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대상 예방교육 강화 필요

□ **양성평등 전담 조직 강화**

- 양성평등 관련 업무 총괄부서 지정·운영(인성건강과)
- 양성평등 현장지원단 구성 운영 및 관리자·업무담당자 연수 지원
- 양성평등 중점학교 운영 및 우수사례 공유

□ **양성평등 중점학교 운영**

-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 운영하는 양성평등 중점학교 운영(초1, 중1)

IV 추진 목표

비전

사람의 가치가 존중 받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목표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3대 영역	주요 추진 10대 과제
<p>평화롭고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p> <p>지속추진</p>	<p>1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구성 지속 운영</p> <p>2 관계기관과 연계한 안전한 환경 조성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CCTV 설치, 안심알라미서비스 지원 등)</p>
<p>성폭력 예방 교육 활동 내실화</p> <p>중점추진</p>	<p>3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관리자, 성교육담당교사, 성고충상담원, 학생, 학부모, 양성평등)</p> <p>4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학생간 자율적 예방활동, 학교문화 개선 노력 등)</p> <p>5 디지털(사이버) 성폭력 신고체계 및 교육 강화 (24시간 핫라인 운영, 위기지원, 예방교육 강화)</p>
<p>성폭력 신고·대응체계 강화</p> <p>제도개선</p>	<p>6 학교 성폭력 신고·보고체계 구축 (신고의무 강화, 교육청 보고, 성고충상담원 운영)</p> <p>7 아동·청소년에 대상 성보호 법률 준수 강화 (위반행위 과대료 부과)</p> <p>8 교(직)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 준수 및 징계 강화 (징계기준 준수, 엄정한 처벌, 책무성 제고 등)</p> <p>9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 (전담 조사관 배치, 지침에 따라 조사·처리·컨설팅, 메뉴얼)</p> <p>10 피·가해 학생 상담 및 치유 지원 활동 내실화 (피해자 상담 및 치료지원, 가해자 특별교육 실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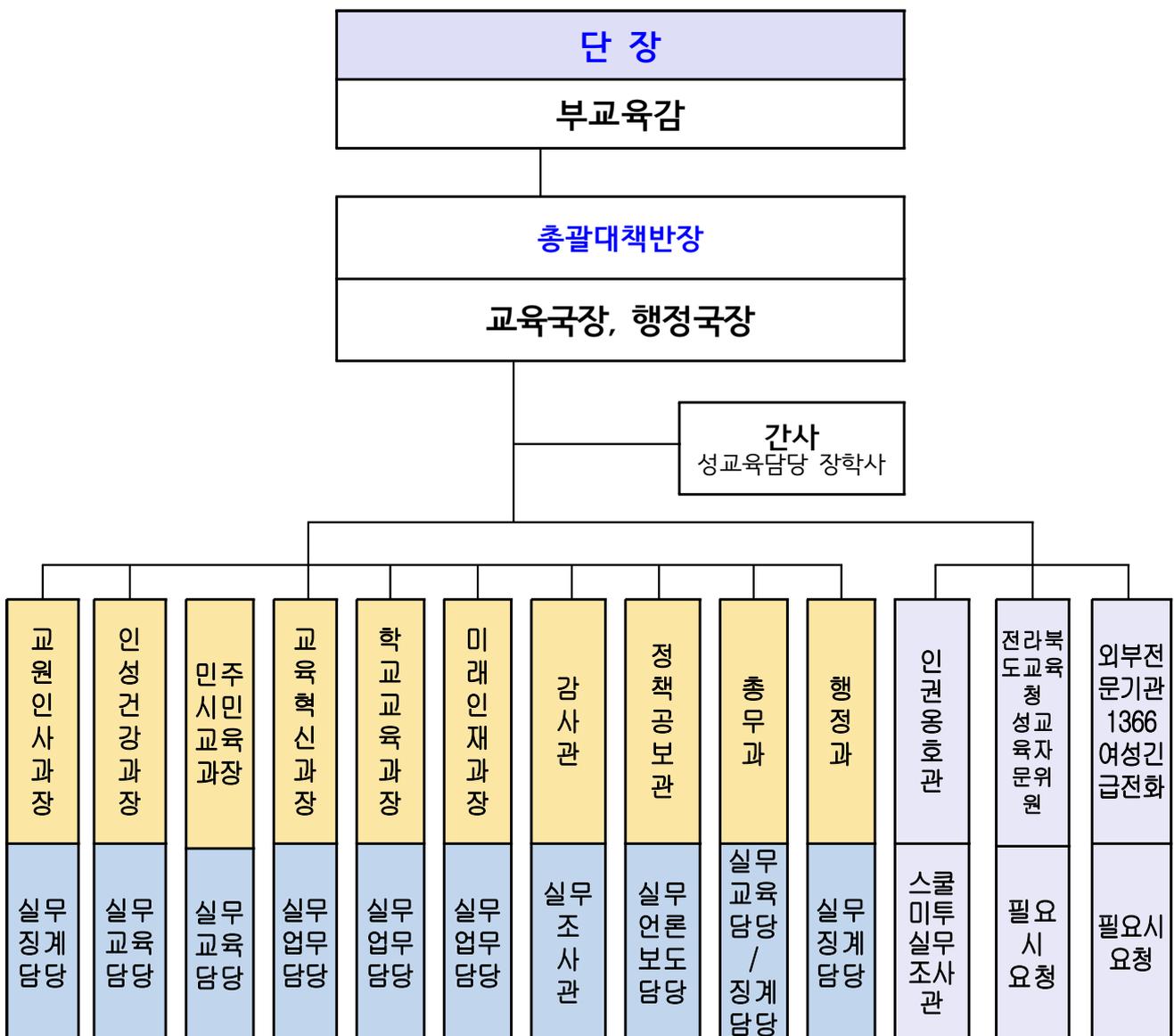
V 세부 추진 과제

과제1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지속 운영

지속추진

□ 추진단 구성 (필요시 관련 전문가 포함하여 확대 운영)

- 추진단 단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총괄대책반장은 교육국장으로 구성
- 위원은 사안에 따라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안처리는 실무위원 중심으로 업무 처리,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사가 전담



<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조직도 >

○ (역할 및 기능) 긴급 중대 사안 발생 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가동하여 총괄 대책 논의

- 필요시 관련 전문가(자문위원) 포함하여 확대 운영
-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관리자(교장 또는 교감)에 의한 가해 등 학교 자체적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근절 추진단은 (해당 부서의 장) 중대 사안 여부를 논의하고 상급기관(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사안 안내 및 지원

* <중대 사안>이란 형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범죄행위, 장기적, 반복적 행위, 행위·피해자가 다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직원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등

- 필요시 학교 자체 사안처리절차와 병행하여 상급(외부)기관 조사 의뢰
- 학교 사안처리 지도·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및 교육적 해결 노력을 지원
- 피해학생 및 교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회복 지원
- 해당학교 교육공동체 교육활동 조기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도모
- 평상시 월 1회 이상 실무위원 협의체 구성 운영

※ 각 과별 실무위원을 지정하여 정보공유 및 업무 협의 실시

○ (실무위원 구성 및 역할)

담당부서	직위	담당	역할
인성건강과	장학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 구성 및 운영 •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연수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시스템 입력 관리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구축·운영(총괄) •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제작 보급 • 성폭력 예방관련 자료 보급

담당부서	직위	담당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인권교육 중점학교 운영/ 양성평등 문화조성 • 성교육 동아리, 교사연구회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조사관 주무관 전문상담사	사안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실태 조사 • 성폭력 사건 처리 모니터링 • 학생 인권 피해 관련 조사 등 조사 지원 • 학생(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현황 통계 및 교육부 보고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신고센터 운영(학생) • 성희롱·성폭력 사안 인권옹호관제 운영 •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 •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Wee센터(위클래스) 및 피해·가해 학생 치료 지원 • 경찰 등 유기적 협력체제 및 학교안전망 구축 • 배움터봉사자 배치, CCTV 설치, 안심알리미 서비스운영
교원인사과	장학사	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교원) • 교원대상 성비위 관련 징계 처분/피해자 통지 • 성범죄 수사 통보시 직위해제, 성범죄 교원 엄정 징계 • 가해교원의 재발방지 교육/상담 •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학교교육과	장학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학교 공직기강 확립 대책 추진
교육혁신과	장학사	특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공직기강 확립 대책 추진 • 특수학교(학급)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 및 조치
미래인재과	주무관	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관계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학원 내 발생 사안 조사 및 조치
감사관	조사관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특정 감사 및 처분(요구), 후속조치 • 성폭력 특별조사 (사안의 중대성 여부 고려) • 교원/ 일반행정직/교육공무직 등 필요시 사안 조사 • 중대 사안 감사 요청 시 특정 감사 실시 • 법률위반통보 성비위 공무원 징계처분 요구 등
총무과 (일반행정분야)	주무관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일반행정직) • 전라북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관련 직원 교육 등 • 일반직원 등에 관한 성범죄 발생시 사안 후속조치

담당부서	직위	담당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수사 통보시 직위해제, 성범죄 연구 직원 엄정 징계 • 국민신문고 등 성희롱·성폭력 사안 접수 및 관련부서 통보
행정과 (교육공무직분야)	노무사	교육공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교육공무직) • 성범죄 직원 엄정 징계 • 국민신문고 등 성희롱·성폭력 사안 접수 및 관련부서 통보
정책공보관	장학사	언론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사안 언론 대응 및 홍보 • 성희롱·성폭력 사안 법률 자문단 운영 • 성희롱·성폭력 사안 법적 대응 지원
성폭력 근절 추진단 (긴급 대책 기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중대사안 발생시 특별 운영 상황 등 논의 • 긴급대책반, TF, 자문단등 구성 운영

과제2

관계기관과 연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즉각추진

□ 전문기관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조체제 마련

- (성폭력 전문기관)을 통해 실질적 보호 연계 방안 마련
 - 전주 7기관, 군산, 익산 2기관, 익산, 김제 1기관 등(16기관)
 - 피해학생을 위한 응급조치, 상담, 법률적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신속한 초기 개입 및 컨설팅 지원
- (상설 협의체 운영)학교(성)폭력 대응을 위한 전북(교육청-경찰청)
 - 학교(성)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역할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 마련
 - 경찰청(담당계장 및 업무담당자), 교육청(담당과장 및 장학사, 주무관)
 - 협의체 회의: 분기별 1회 실시(3월, 6월, 9월, 12월 실시)
- (화해분쟁 조정사업 대폭 확대) 학교(성)폭력 화해분쟁 조정단 운영
 - 학교 성폭력 사안 따른 분쟁 조정 및 갈등 관리
 - 위원: 관련 전문기관 소속 위원들로 구성(조정위원 23명)

-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성폭력 발생에 따른 사회적 우려 확산으로 안전한 등·학교 지원 및 안전대책 마련
- (배움터자원봉사자 운영)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학교(성)폭력예방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운영
- (고화질CCTV 설치 운영) 학교 내·외 고화질 CCTV설치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및 학교폭력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과제3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중점추진

□ 의무교육

구분	성희롱 예방 교육	성매매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 의무 대상	- 교직원 (비정규직 및 파견 포함)	- 교직원 (비정규직 및 파견 포함) 중·고등학생	- 교직원 (비정규직 및 파견 포함) - 학생
교육 횟수	- 교직원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직원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직원 : 연 1회, 1시간 이상
		- 중·고등학생 : 연 1회, 1시간 이상	- 학생(초·중·고) : 연간 15시간 이상의 성교육 의무적으로 실시 (성폭력 예방 교육 3시간 포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학생교육

- (모든학교) 학년별 15차시 이상 성교육 의무 실시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감 및 토론, 상황극 등 이해 활동중심의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생 발달단계 및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과정 및 교수학습활동 적용
 -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예방교육의 내실화
- (수업컨설팅, 수업연구회 활성화) 교과 통합 성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 연구회 지원
- (취약지역 성폭력 예방교육 집중 프로그램 운영) 성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체험형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인형극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와 1:1 대응투자
 - 희망하는 학교(23교)에 성 인권 전문강사 지원하여 학생 성교육 실시
- (성교육 수업 연구회 운영) 2팀(자체)
 - 교과 통합 성교육 자료개발 및 성교육 우수사례 공유, 정책협의

□ 교직원 연수

- (폭력 4대 의무교육)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매년 각각 1시간 이수 및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입력
 - ※ 비정규직원 참석 필수, 신규 교직원은 임용 2개월 내 교육 실시
 - 폭력예방교육 관리자 이수대상에 교감, 부장교사를 추가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함양
- 교육공무원의 윤리 의식 및 복무 자세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 학기 초 부서별 각종 교육(업무)활동 기본 계획 안내 시 윤리 의식 및 복무 자세 제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 내용 포함
- 학교장 연수시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 중심 및 법령 이해 연수 실시
- 학교장교(원)감의 자격연수 시 표준 교육과정에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포함
- (관리자 연수 실시)건전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한 관리자 연수 실시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연수) 성고충상담원의 사안처리업무 능력 향상 및 현장 사례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 학부모 연수

- 매 학기 실시되는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성폭력 예방교육 포함(학기별 1회 이상)
- (학부모 상담 주간 활성화) 학기 초 학부모 대상 집중 상담주간을 운영하여 성폭력 등 가정 내 위기요인 점검 및 학생 보호

□ 양성평등 교육 강화

- (선도학교 양성) 인권 및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학교내 양성평등교육 활동 강화

과제4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중점추진 제도개선

- 관계·회복·자치 중심의 생활교육으로 언어 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강화
 - 회복조정지원단 협의회(월1회), 연수(분기 1회) 개최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으로 학생들의 자율적 성폭력 예방활동을 통한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사이버예방선도학교, 어깨동무학교)
 - 사이버 예방 거점 위(Wee)센터 운영(전주덕진, 완산)

- 유해정보 차단,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문화 정착,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 강화
 - 지방경찰청, 도청, 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인터넷드림마을, 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체계 강화
-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 지양의 회식문화로 개선

과제5

디지털사이버 성폭력 예방 신고 및 교육 강화

즉각추진

- (긴급 신고센터 운영) 24시간 핫라인 운영 : 여성긴급전화 1366(온라인, 전화, 방문, 실시간 채팅)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연계(삭제지원 등)
 -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시설 연계 상담·치료, 수사지원
- (경찰청)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학교(성)폭력예방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운영
 - 경찰청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24시간), www.kocsc.or.kr(디지털성범죄 신고탭)
- (전국) 피해 상담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지원내용 : 상담, 삭제, 수사, 기타 법률·의료·보호시설연계 지원
 -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상시]
 - 전화(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평일10시~17시])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활용 및 자체 제작 보급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 (카드뉴스) 경찰청의 '사이버 성폭력 예방교육자료' 등 접근성을 고려한 카드뉴스

스 형태의 예방교육자료 (출처: '딱따구리' http://m.blog.naver.com/woodpecker_official/221868564271)

(영상자료) '젠더온(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에듀넷 티클리어'(교육부)와 같은
온라인교육 플랫폼 내 교육자료 목록 (<http://genderon.kigepe.or.kr/>)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법·의료지원, 자료삭제지원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활용 방법 안내

- 성교육 동아리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교육 자료 자체 개발 보급

○ 학생, 학부모 교육 협조

·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조기 실시(상반기 중) 협조

* 가정통신문 또는 알림 어플 등을 통한 교육자료, 카드뉴스, 동영상URL 등 배포

※ 안내자료는 예시(안)이며, 학교에서 자체 여건 및 학생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활용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 기관으로 응급조치, 상담, 법률적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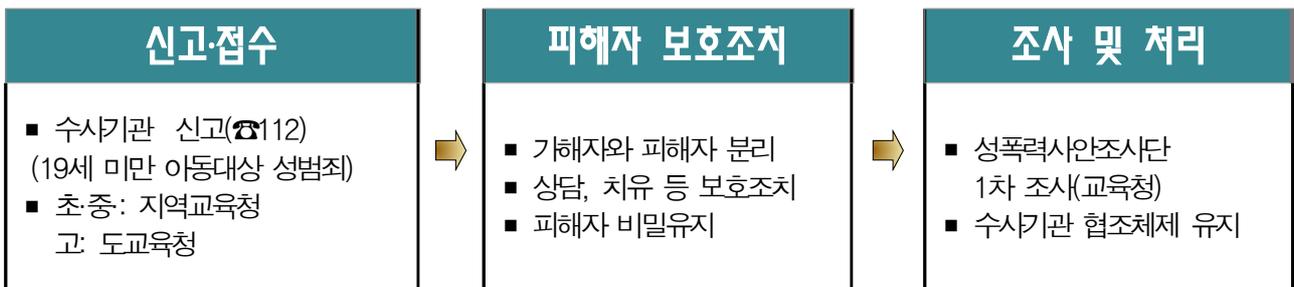
지역명	기관명	전화번호	운영 주체
전주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부설	236-0151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새벽이슬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223-3015	사)행복나눔지원센터
	호남 성폭력 상담소	286-1366	개인
	전주 다솜 성폭력 상담소	223-5683	개인
	전북해바라기센터(구 원스톱지원센터)	278-0117	전북대병원
	해바라기센터(아동)	246-1375	여성가족부
	대한법률구조공단	251-4034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긴급전화 1366	227-8832	여성가족부	
군산	군산 성폭력 상담소	442-1570	개인
	로템 성폭력 상담소	445-9192	개인
익산	익산 성폭력 상담소	834-1366	개인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280-9337	원광대학병원
정읍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정읍지부	537-1366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시민성폭력상담소	536-1369	개인
남원	남원 YWCA	625-1316	사)남원 YWCA
	남원 성폭력 상담소	635-0711	개인
김제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김제지부	546-8366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과제6 학교 성폭력 신고·보고체계 구축

제도개선

- PC, 스마트폰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성폭력 익명 신고·상담서비스 활성화

이용 매체		성매매 예방 교육	기능	운영기관
PC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전라북도교육청/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성희롱성폭력온라인신고센터 운영	게시판을 이용한 비밀신고/상담	전라북도교육청
스마트폰	117	빠른 상담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상담	경찰청
전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 112		전화를 이용한 신고·상담	경찰청
	1366(여성긴급전화), 1388(헬프콜청소년전화)			여성가족부
단위학교	성고충상담창구		성고충상담원(신고담당자)에게 신고·상담	학교



- (신고의무 위반)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학교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인지 시 바로 경찰신고 및 해당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
- 학교 내 성고충상담창구 안내 및 홍보 강화
- 성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매뉴얼 상시 게시

- (학부모등 제 3자가 신고를 한 경우) 학부모등 제 3자가 신고를

하였더라도 기관장과 그 종사자는 별도의 신고의무 발생
단, 제 3자에 의해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가 알려져 수사가 진
행 중인 것은 제외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관련 법률에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 여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는 전혀 별
개의 문제이므로 법률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교육청 사안 보고)

- 성폭력 사안 발생을 인지한 경우 교육(지원)청 주관부서에 보고 및 중
대사안 처리 의뢰 : 48시간 이내(중대 사안*은 즉시 유선 보고)
- * <중대 사안>이란 형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범죄행위, 장기적, 반복적
행위, 행위·피해자가 다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직원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등
- 보고 절차 및 방법 (유선 후 FAX) : 각급 학교 → 해당 교육지원청(도교육청)

○ (업무관할)

교직원의 경우

- 시·군 교육지원청 : 시·군 지역 내 초·중 성폭력 사안 담당
- 도교육청 : 고등학교 및 시·군 교육지원청 성폭력 사안 중 지원
이 필요한 사안 담당

학생의 경우

- 시·군 교육지원청 : 시·군 지역 내 초·중·고 성폭력 사안 담당
- 교육청 사안 상담·조사 결과 중대 사안으로 판단(성폭력 근절단 판단) 되
는 경우, 별도 특별장학 및 특정감사를 할 수 있음

□ 대상별 현황

가해 피해	학생	교원	행정직원	일반인
학생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총무과, 행정과	민주시민교육과
교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교원인사과	교원인사과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원인사과 총무과 행정과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원인사과
행정직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총무과	교원인사과 총무과 행정과 (성고충심의위원회)	총무과, 행정과 (성고충심의위원회)	총무과
일반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교원인사과, 감사관	총무과, 감사관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조치	처리과조치사항
심리/상담 보호프로그램 회복교육	2차 가해 유사 사례 예방 특별교육	사안 조사 분리조치여부 결정 처벌 검토 재발방지 대책

□ 대응 절차 개관



-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인지 즉시 학교장은 성범죄 교(직)원을 피해자와 격리 조치(성고충심의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개최하여 담임 해제, 수업 참여 배제 등)
- (교육청) 교(직)원의 학생 대상 성비위 사안 중 중대한 사안은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 등 실시
 - 사실 관계 확인, 사안처리 절차 준수에 대한 특별장학 실시, 축소·은폐 등 중대한 사안인 경우 감사 요청
 - 성범죄로 수사, 조사 통보 시 교직원 직위 해제

□ 국·공립 징계기준 준용

- 사립 초·중등학교 교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시 국·공립교원의 징계기준 준용 의무화
- 관할청의 징계요구시 임용권자의 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요구 의무화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징계 결과 피해자 통보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비위 교육공무원의 징계 결과 통보

□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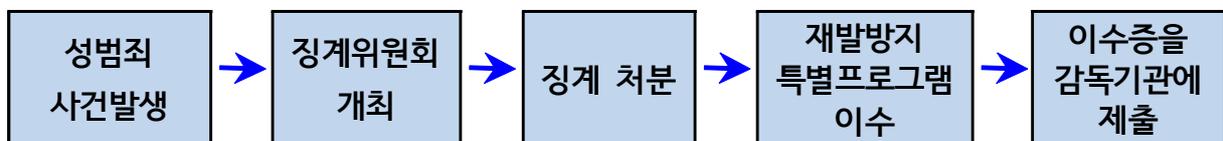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
- 모든 성폭력 및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최소 해임으로 배제 징계
- (형사처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임, 성인 간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며 직장내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

손죄가 성립하거나 성폭력특별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형사상 처벌도 가능

- (행정벌)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해서 신분상 처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교육기관이라는 공간 및 교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 공무원 성실의무, 품의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 대상이 됨

□ 성비위 징계 교원 재발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비위 징계를 받은 모든 교원이 반드시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이수 의무 강화
- 정직 이하 처분을 받아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이 교단 복귀시, 해당 지역 성폭력 교육·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성인지 교육 및 개별 상담(재발방지를 위한 교원 특별교육)이수 의무화(2017년~)
- 운영 방안
 - 대상 : 성폭력 범죄 징계 처분 대상자
 - 이수 기간 : 징계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 특별교육 이수 인정 시간 : 30시간 이상(자비부담)
 - 연수기관 : 예방교육전문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 범죄 재발 방지 교정·치료 특별교육 이수 과정 절차



-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 중심으로 선정
- ※ 법원판결로 성폭력 및 성구매자 관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명령을 30시간 미만으로 받은 경우에도 30시간이 되도록 이수해야 함(예 : 법원 명령 15시간인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15시간 징계 처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 **[근거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부과시점]** 「2015. 12. 1.부터 시행
- **[부과대상]** 수사기관 법률위반 통보 건, 교육청 특별장학 및 감사 조치 건,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위반 건 등

위반 행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 미이행 (법 제 67조 제 4항)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 (법 제 67조 제3항)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 요구 불이행 (법 제67조 제2항)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 피해학생(학부모)이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률상 신고 의무 및 과태료 부과 안내 강화
 -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 여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률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전담조사관(학생인권센터) 배치

- 성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구제팀에서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 지침」에 따라 사안 조사 및 처리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사안 조사 결과 심의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된 사안에 대한 심의하며, 사안 발생시 상시 처리

□ 전문 컨설팅 강화

- 학교 현장 요청 사안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처리 지원 및 후속 조치 이행 지도 강화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구제팀에서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 지침」에 따라 사안 조사 및 처리 안내
- 피·가해자 교육
 - 피해자에 대한 회복교육 및 가해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 학교 전체 구성원에 대한 예방(성인지) 교육

□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수정) 보급

- 사람의 가치는 높이는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활용(20년 12월 배부예정)
-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 최소화, 사안에 대한 적절한 초기 대응 및 사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보급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홈페이지 탑재

□ 피해 학생 상담·치유 지원

- (상담 지원) 위기 사안(자살, 학교폭력, 성폭력 등) 발생 학교 및 학생대상 상담 및 유관 기관 연계 심리치료 강화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심리지원 통한 정서적 안정, 학교생활 회복
- (치유 지원) 교내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및 피해 학급·학년 대상 집단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지원
 - 위(Wee)센터 특별상담실 운영(위기사안 발생학교에 상담전문인력 상주)
 - 위기학생 선별 심리검사(스크린)를 통한 심층 상담 지원
 - 위기 대응 상담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전문기관 연계로 심리지원 및 의료적 치료 지원 강화
 - 성폭력, 자(살)해 위기학생 대상 집중 상담료 지원
 - 위기학생 심리 진단 및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자문의 운영
 - 성폭력, 자(살)해 등 사안 발생 학교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운영

- 관계·소통을 위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반짝반짝 빛나는 나)
 -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손상된 자존감 회복, 대인관계 기술 습득을 통해 의사표현 연습, 자기 효능감 및 자존감 증진, 자기 이해 및 타인이해

□ 피해 교원 상담·치유 지원

- (상처 치유 지원)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상담기관 연계 및 심리치료, 병원 진료, 근무 환경 개선 지원

- 피해교사 대상 상담 및 병원 진료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 회복
-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로 복귀 지원
- 피해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전보 등 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VI 기대 효과

-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 처리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으로 교직사회 신뢰도 향상
- 성희롱·성폭력예방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형성

VII 행정사항

- 우리청 부서별 업무분담 및 추진 사항 철저
 - 각과 분담 업무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운영, 사안 발생시 신속한 처리 지원
- 각급 학교
 -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성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이행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붙임 1**「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알림**

- (구성)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구성 확대 및 운영 개선
 -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구성을 5-9명에서 9-15명으로 확대
 - 일반징계위원회는 회의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
 - ※ 일반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퇴직공무원 임명 및 성별 비율 제한(이하 일반·특별·공립대학 징계위 포함)
 - 퇴직 전 5년부터 해당 기관(소속기관 포함)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위촉 가능
 - 특정 성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성비위) 성비위 사안의 경우 전문가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수사결과통보서 대체 가능)하고, 신속한 징계처리를 위해 우선심사제 도입
- (관할) 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교육공무원의 징계관할을 교육청으로 이양

□ 시행 및 적용 관련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후('19.5.27.) 시행(부칙 제1조)
- (적용례) 전문가 의견서, 감사원 통보, 우선심사, 관할 변경 등 개정사항은 이 영 시행 후 징계등 의결 요구 건부터 적용(부칙 제2조부터 제5조)
- (경과조치) 퇴직공무원 임명 및 성별비율 제한은 현재 위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적법한 구성으로 간주(부칙 제6조부터 제7조)
 - ※ 종전 위원 해촉 불필요, 다만 신규 위원 위촉 시 퇴직공무원 제한 및 성별비율 준수

참고 1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 행위 유형별 분류

행위 유형	내 용
성희롱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추행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접촉하거나(집적거리기, 문지르기)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 시키는 등의 행위
성폭행	(강간) 폭행·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로 강제로 삽입시키는 행위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학대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스토킹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미행, 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

○ 대상별 분류

아동 성폭력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강간, 강제 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청소년 성폭력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장애인 성폭력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 학교 내 교직원에 의한 성희롱 유형별 예시(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유형	내 용
신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쁘다며(혹은 잘생겼다며, 귀엽다며) 꼭 껴안기 • 헤드락을 하거나 뺨 등을 비비는 행위 •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 나의 신체 일부를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 교복/체육복 등 일부를 들추거나 잡아당기는 행위(치마길이 확인이나 속옷 착용 확인 등) • 머리, 손, 턱선, 어깨, 귓볼, 목, 허벅지,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 •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봉으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 • 나의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는 행위 • 본인에게 안마를 하라고 요청하거나, 요청에 따라 안마를 하게 된 행위
언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 이성교제에 대한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등의 농담을 하는 행위 • 나의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성적인 농담,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 수업시간에 (암기를 위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성행위,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 등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행위
시각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금슬금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는 행위 • 나의 특정 신체부위를 응시하거나 들여다보는 행위 • 나에게 컴퓨터통신이나 SNS 등을 통해 성적인 행위, 성적인 언행, 여성을 성적대상화한(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영상물 등을 보여주거나 보내는 행위 • 나에게 성적인 비유, 성적인 언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칠판 등에 성적인 비유, 성적인 행동 등과 관련된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문구를 쓰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좁은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불쾌감이나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하는 상황 •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기다리기, 연락하기 등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참고 2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 피해자 전문 상담 기관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 기관으로 응급조치, 상담, 법률적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역명	기관명	전화번호	운영 주체
전주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부설	236-0151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새벽이슬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223-3015	사)행복나눔지원센터
	호남 성폭력 상담소	286-1366	개인
	전주 다솜 성폭력 상담소	223-5683	개인
	전북해바라기센터(구 윈스톱지원센터)	278-0117	전북대병원
	해바라기센터(아동)	246-1375	여성가족부
	대한법률구조공단	251-4034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	여성긴급전화 1366	227-8832	여성가족부
	군산 성폭력 상담소	442-1570	개인
익산	로템 성폭력 상담소	445-9192	개인
	익산 성폭력 상담소	834-1366	개인
정읍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280-9337	원광대학병원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정읍지부	537-1366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남원	정읍시민성폭력상담소	536-1369	개인
	남원 YWCA	625-1316	사)남원 YWCA
김제	남원 성폭력 상담소	635-0711	개인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김제지부	546-8366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 행위 학생 특별교육기관

Wee센터, Wee클래스(상담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전주	253-9214(덕진)/253-9523(완산)	273-1411(전북)/227-1005(전주)
군산	450-2680	468-2870
익산	850-8990(제1) / 852-4501(제2)	852-1388
정읍	530-3082	531-3000
남원	635-8530	633-1977
김제	540-2555	545-0112
완주	270-7696	291-3303
진안	430-6290	433-2377

무주	324-3399	323-7717
장수	350-5229	351-5161
임실	640-3570	644-2000
순창	650-6320	652-1388
고창	560-1616	563-6792
부안	580-7448	580-4518
전문기관	청소년꿈키움센터(063-277-9890)	전주YWCA(063-224-5501)

● **대안교육 위탁기관 (장기: 월 단위)**

꿈누리교실 : 063-253-2279	가온누리희망티움 : 070-8738-1318
가정형Wee센터: 286-9801	익산시청소년수련관 : 063-838-1700
민들레학교 : 063-283-1356	희망샘학교/해맑음센터 : 070-7119-4119
명주골학교 : 063-247-8311	다음세대학교 : 063-452-6326
움터 : 010-5333-0513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063-323-2285
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참고 3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자. 소속 기관 내의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성매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마.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사.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통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차.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신고자 신상정보의 유출, 신고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파.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6의2.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를 활용한 성희롱은 처벌 받음**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 아동·청소년대상 성희롱은 성범죄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14항 (유치원, 각급 학교, 의료기관,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등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해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